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일상감사 불철저

관 계 기 관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용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 감사실에서는 SH공사 「일상감사 시행내규」에 따라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대상을 [표 1]과 같이 ‘계약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였고,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4,045개 사업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이 3,362개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표 1] 일상감사 대상업무별 실시현황

연번	일상감사 대상업무	계		2015		2016		2017		2018. 4.	
		실시건수	의견제시	실시건수	의견제시	실시건수	의견제시	실시건수	의견제시	실시건수	의견제시
	계	4,045	310	1,183	147	1,245	87	1,224	59	393	17
1	주요사업과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525	92	177	49	156	28	153	14	39	1
2	안전에 관한 사항	7	2	1	1	1	0	4	1	1	0
3	계약에 관한 사항	3,362	178	969	82	1,040	50	1,013	33	340	13
4	예산·회계·결산·자금에 관한 사항	44	8	15	6	14	1	12	1	3	0
5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60	18	11	5	21	5	22	7	6	0
6	인사에 관한 사항	47	12	10	4	13	3	20	3	4	2

한편 SH공사는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 받는 ‘지방공사’에 해당되며, 지방공사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또한 SH공사 「일상감사 시행내규」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위법·부당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 일상감사 의견서를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시행내규 제8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할 때는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사업을 일상감사 할 때는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기준,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등이 적정하게 정해져 있는지 검토하고 위 기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에 적시하여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에 2018. 1월부터 2018. 4월까지 일상감사한 3천만원 초과 협상에 의한 계약사업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제안서 평가기준 등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데도 시정·보완하도록 감사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게 발주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계약 관련 규정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하도록 감사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감사담당자의 계약 관련 규정 미숙지와 지방계약법령 등의 교육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저촉되어 발주된 사업

연번	사업연도	사업명	관련 규정 저촉사항	비고
1	2015	TT 제작 및 송출용역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제안서 정량적 평가 각 항목의 배점한도는 정량적 평가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정량적 평가 일부 항목의 배점이 정량적 평가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하여 정함	
2	2015	IIII 관리용역		
3	2015	IIIIII 인식 조사용역		
4	2016	2016년도 IIII 관리용역		
5	2016	2016년도 IIIII 관리용역		
6	2016	II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7	2016	II기록화 용역		
8	2016	IIII활성화 용역		
9	2016	IIIIII지침 수립용역		
10	2017	II시스템 구축사업		
11	2018	2018년 III제작용역		
12	2018	2018년도 IIIII운영용역		
13	2018	IIIIII방안 수립용역		

연번	사업연도	사업명	관련 규정 저촉사항	비고		
14	2015	XX 분석용역	<p>○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또는 항목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p> <p>- 제안요청서에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음</p>			
15	2015	XX 관리용역				
16	2015	XX 전략 수립용역				
17	2015	2015년 XX 조사용역				
18	2015	2015년도 XXX 제작용역				
19	2015	2015년 YY 운영 대행용역				
20	2016	2016년 ZZ 사업 운영용역				
21	2016	2016년 AA 조사용역				
22	2017	BB 계획 수립용역				
23	2017	CC 운영관리용역				
24	2015	DD 분석용역			<p>○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능력+가격)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여야 하는데도</p> <p>- 제안요청서에 협상순서 결정방법(동점자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음</p>	
25	2015	EE 관리용역				
26	2015	FF 진단용역				
27	2015	2015년 GG 운영 대행용역				
28	2016	HH 운영 위탁용역				
29	2016	2016년 II 사업 운영용역				
30	2016	2016년 JJ 제작용역				
31	2016	2016년 KK 컨설팅용역				
32	2016	LL 방안 연구용역				
33	2016	MM 전략 수립용역				
34	2016	NN 방안 연구용역				
35	2016	OO 전략 수립용역				
36	2016	PP 지침 수립용역				
37	2017	QQ 운영 위탁용역				
38	2017	RR 계획 수립용역				
39	2017	SS 운영관리용역				
40	2017	2017년 TT 사업 운영용역				
41	2017	UU 행사 운영용역				
42	2017	2017년도 VV 제작용역				
43	2017	WW 모델 개발용역				
44	2017	XX 방안 수립용역				
45	2018	YY 방안 연구용역				
46	2018	ZZ 전략 수립용역				
47	2015	2015년 AA 제작용역	<p>○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모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하는데도</p> <p>- 협상적격자를 70점 이상으로서 고득점순 상위 3개 업체로 제한함</p>			
48	2016	2016년 BB 제작용역				
49	2018	2018년 CC 제작용역				

조치할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 계약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데도 시정·보완하도록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감사 및 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상감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